

대구지방법원 2020. 2. 19 선고 2019나31440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0. 2. 19 선고 2019나314405 판결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. 7. 10 선고 2018가단10380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

피고, 피항소인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

변론 종결2020. 1. 15.

판결 선고2020. 2. 19.

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. 7. 10. 선고 2018가단10380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D 대 77m²(이하 'D 토지'라 한다) 중 별지 1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17m²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E 대 116m²(이하 'E 토지'라 한다) 중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14m²를 철거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809,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1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D 토지, 경북 군위군 F 도로 111m²(이하 'F 토지'라 한다), E 토지, 경북 군위군 G 대 31m²(이하 'G 토지'라 한다)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년 1,076,280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'그러나' 다음에 '선내 L 부분의 면적은 17m²로, 이 사건 주택의 부지인 J 토지 면적(354m²)의 약 4.8%에 불과한 점, 이 사건 축사가 지어진 선내 그 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데다가 이 사건 주택의 통행로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'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이영철

판사정한근

판사이용욱

별지